

《충청학과 충청문화》 간행규정

2020. 12. 15. 제정

2022. 12. 28. 일부개정

2025. 10.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지역과 관련된 인물, 역사, 문화유산 등에 관한 연구를 학술지로 발간한다. 국문으로는 「충청학과 충청문화」, 영문으로는 「Journal of Chungcheong Studies and Chungcheong Culture」라고 표기한다.

제2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①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② 「충청학과 충청문화」 학술지는 발행 간기 없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3조(발간대상) ① 한국사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중복 게재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학술지에 공지한다.

② 충청도와 관련된 기획논문·일반논문, 비평, 서평, 자료소개 등을 모집한다.

제4조(저작권) ①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와 동시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이전 되나 개인적인 논문집 및 저서 간행 시 기관의 동의 아래 게재가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두고 시 투고자로부터 미리 동의 받도록 한다.

② 저작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학술연구 및 교육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물의 DB 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한다.

- ③ 저작물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및 디지털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의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편집위원회) 「충청학과 충청문화」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임무) ①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충청학과 충청문화」의 특집 및 서평 등을 기획·요청한다.

③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7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12인, 편집간사로 구성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충청학 제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서 업적이 뛰어난 내·외부 연구자를 원장이 위촉하며,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한다.

③ 편집위원은 한국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 활동 및 학술성고가 우수한 전문가 가운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이 위촉한다. 단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담당 연구원이 수행한다.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편집회의)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인, 편집간사가 참여했을 때 이루어진다.

② 연 2회, 논문 투고가 마감된 후 개최한다.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제10조(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 마감 후 10일 안에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3인 위촉한다.

② 투고된 원고는 3차의 심사(2차의 편집위원회 심사 포함)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1. 1차 심사(편집위원회) :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2차 심사 : 논문 1편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 3인에게 심사 의뢰한다.

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연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 논리의 정확성, 자료활용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학계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다. 심사위원은 C나 D를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평가 항목	논문의 형식과 구성	내용	배점(100점)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10
	목차의 적절성	10	
	서술의 균형과 논리의 일관성	10	
	용어구사의 정확성과 문장 완성도	10	
논문의 내용과 논지	논제와 내용의 학술적 가치	15	
	기존 연구성과의 이해 및 반영	15	
	자료활용의 적합성	15	
	연구결과의 설득력과 독창성	15	

3. 3차 심사(편집위원회) : 심사서를 근거로 수록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논문심사원칙) ①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10. 14>

심사결과			종합판정	비고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당호 게재	
A	A	B		
A	A	C	수정 후 당호 게재	
A	B	B		
A	B	C		
B	B	B		
B	B	C		
A	A	D		
A	B	D	수정 후 차호 재심사	- C판정(당위원 재심) - D판정(제4자 재심)
A	C	C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게재불가 (반려)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 ②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 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비평논문·서평·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 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 ④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 ⑤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⑥ 수정 후 재심사의 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1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5. 10. 14.>

⑦ 게재불가의 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10. 14.>

제4장 논문투고

제12조(투고규정) ① 논문은 수시로 모집하되 투고마감일은 해당 호 발간 60일 이전까지이다.

② 원고는 「충청학과 충청문화」의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http://jscsc.apubl.net/>)에 회원가입 후 제출한다. 원고 말미에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투고 일을 기재한다.

③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다.

제13조(논문 작성 양식) ① 분량은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150매를 초과할 수 있고 초과분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② 논문은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되 본 기관의 논문표기 원칙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③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제2저자, 제3저자 등으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라 표기하지 않는다.

④ 원고 제출 시 원고지 3매 이내의 국문초록을, 심사종료 후 수정원고 제출 시 1,0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단 비전공자도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기술한다.

⑤ 심사종료 후 수정원고 제출 시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word) 5~9개를 첨부 한다.

제14조(심사료 및 게재료) 별도의 심사료와 게재료는 없다.

「충청학과 충청문화」 원고작성기준

(1) 본문

- ① 문체는 간결한 문어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외국인명·지명·사건명·논저명의 경우, 처음에만 한글 옆에 ()를 붙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확한 한글 발음을 알기 어려운 경우 (일본·중국의 인명·지명) 계속 한자로 표기한다.
- ④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인용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 』 : 문헌·저서·정기간행물(학회지포함)·신문
 - 「 」 : 논문·작품
 - [] : 한글과 발음이 다른 한자 표기 ⇒ 예) 노루목[獐 項]
 - · (가운뎃점) : 동일 사항의 나열 ⇒ 한글에서 입력할 때 전각이 아닌 반각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용

- ① 본문 중에서는 “ ” 안에 인용하며,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 안에 넣는다.
- ②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 ”를 붙이지 않으며, 출처 표기는 위와 같이 한다. 단 글자와 문단 모양은 편집자가 조정한다.
- ③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줄임표는 ‘…’으로 표기하며, 강조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굵은체로 쓰거나 하거나 밑줄을 긋는다. 단, 방점은 붙이지 않는다.
- ④ 각주에 나오는 인용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3) 각주

A. 동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

-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은 「 」, 게재지는 『 』 안에 표기한다.
- 발행처·발표연대 순서로 표기한다.
- ‘p.’·‘pp.’·‘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 ⇒ 예) 金喜坤, 「東山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60쪽.
- 신문·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 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서로 표기한다.
 - ⇒ 예)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자, 「北間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李東源, 「北滿 최초의 韓人마을 高安村의 개척자들」, 《月刊中央》 1993년 10월호, 482~504쪽.

② 저서

- 저자명(편찬 주체),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서명은 『 』로 표기한다.
- 발행지는 국내일 경우 생략한다.
 - ⇒ 예) 黃玹,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112쪽.
한국근현대사연구회편, 한국근대사강의, 한울, 1997, 10~22쪽.

③ 중복

- 같은 필자·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 ⇒ 예) 黃玹, 『梅泉野錄』, 112쪽.
金喜坤, 「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60쪽.

B. 서양어로 된 논저일 경우

① 논문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연도, 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논문은 “ ”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권수는 Vol.을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호수는 No.를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권수와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 ‘-’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예)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
1952, p.187.

② 저서

- 저자명, 서명, 권수, 출판지, 출판처, 출판연도, 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권수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예) Paul Tillich, *Systemic Theology* 3(Chicago, 1951), pp.21~22.

③ 중복

- 같은 필자·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학과 충청문화≫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2020.12.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학과 충청문화」 투고 신청서

성명(한글/한문)		성명(영문)	
최종학력			
전공분야			
생년월일			
논문제목(국문)			
논문제목(영문)			
신청연월일			
전화번호			
E-mail			
우편주소			
소속기관		직위	
주요 연구실적 (2편)			

※ 원고분량 및 작성원칙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60매(그림과 도표, 참고문헌, 초록과 주제어 포함) 이내로 하되,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고 시에는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직책, 대표 논저, 주제어, 영문 초록 및 키워드, 참고 문헌을 아울러 작성하여야 합니다.

2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귀하

「충청학과 충청문화」 연구윤리 서약서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논문제목			
<p>저자는 본 논문을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게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1. 저자는 회원 및 투고자에 관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윤리규정 19조를 숙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p> <p>제19조(연구윤리 위반에 조치) 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p> <p>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게재의 취소와 관련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次號) 학술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 게재의 취소는 학술지전자 판 및 목록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한다) 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한다.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충청 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이 연구윤리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 한다. <p>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 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한다.

2. 「충청학과 충청문화」간행 규정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이 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이양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자 : (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귀하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동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본다.

1. (저작물 범위) 본 동의서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인쇄형태의 자료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로 제작한 자료를 포함한다.
2. (저작물 이용범위) 학술연구 및 교육을 위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저작물의 DB 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망을 통해 배포 및 전송을 허락한다.
3. (저작물 공개) 저작물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및 디지털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4. (저작물 이용기간) 저작물이용기간에 대해서 저작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를 허락한다.
5. (사적이용의 제한) 배포, 전송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조사·연구 이외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6.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제공한 개인 정보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시까지 보관한다. 삭제 요청 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한다.

[별표 4]

논문 심사서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등급 참고
(A : 우수 B : 보통 C : 미흡 D : 부적격)

1. 논문의 형식과 구성

평가내용	A	B	C	D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목차의 적절성				
서술의 균형과 논리의 일관성				
용어구사의 정확성과 문장 완성도				

2. 논문의 내용과 논지

평가내용	A	B	C	D
논제와 내용의 학술적 가치				
기존 연구성과 검토의 철저성				
자료활용의 적합성과 온당성				
연구결과의 설득력과 독창성				

3. 논문 게재 여부()

- A : 바로 게재 가능
B : 약간의 수정 후 이번 호에 게재
C : 충분한 수정 후 재투고를 거쳐 게재 여부 결정(다음 호 이후 게재 가능)
D : 게재 불가

4. 심사논문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
(심사평은 필자에게 전달하여 수정·보완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용지에 적어 주십시오.)

작성일 :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성 명	(인)	연락처	
	소 속		전 공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심사비입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별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 및 원고 수당 계좌이체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의사소통·정보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③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 계좌번호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과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 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 확인,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시 까지

※ 귀하는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계좌번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수당 등 지급금의 입금에 이용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동의자 주 소		(휴대전화) (E-mail)
성 명	(서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20 년 월 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귀하